

「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」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8. 04 (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8. 09.22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08. 09.22(월)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환경과장 김근수)

가. 친환경상품의 생산·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구매를 의무화한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,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여 구매 촉진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1) 적용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(안 제4조)

-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, 의회사무과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

2)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」 설치·구성 등(안 제5~10조)

- 공무원 및 관련전문가로 15인 이내로 구성
-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의 심의

3) 친환경상품 생산·구매 촉진(안 제11조)

- 군내 친환경상품 생산·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시책 추진

4) 구매촉진을 위한 중·장기계획수립, 교육·홍보 및 사업자 지원 등
기금 조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으로 한다(안 제12조)

5)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(안 제12,13조)

-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및 구매계획 공표 및 강원도 제출

6) 친환경상품의 구매범위 및 구매예외(안 제14,15조)

- 의무구매범위를 정함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
 - 용역 및 건설공사 등 계약시
- 구매예외 규정을 둠으로서 물품을 탄력적 구입
 - 일반상품과 가격대비 고가, 구입기간 장기소요, 긴급 물품 구입시, 친환경상품 품질저하 등 사유시

7) 친환경상품 생산·소비 촉진(안 제17~20조)

- 군내 친환경상품 생산·기술개발업체 지원 등
 - 친환경상품 생산·개발을 위한 산·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, 교육기관 등에 필요비용 일부 지원
- 군내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요청 및 행정지원

8) 포상 실시(안 제21조)

- 공공기관 포상 실시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

9) 사무분장(안 제22조)

- 친환경상품 구매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부서간 업무분장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진영)

가. 본 조례안은 『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6조 "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"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,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사항으로,

나.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평창군청, 직속기관, 사업소 및 읍·면, 의회 및 기타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친환경상품구매를 촉진하고,
-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"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"를 설치·운영하고,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,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

하여야 하고, 구매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, 일부 친환경상품에 대하여 구매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,

- 기타 친환경상품 생산·기술개발 및 유통·판매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.

다. 결과적으로,

-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한 표준개정안을 기준으로,
-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규정에 근거하여 평창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, 자구용법 등 검토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부. 끝